

## ○○○씨 세보 범례(보규) (○○○氏世譜凡例(譜規))

이 을유보(乙酉譜)는 二〇〇〇년 五月 二十일 「○○○씨 세보 전산화편찬위원회」에서 숙의 결정된 다음 범례(凡例=譜規)에 따라 편찬되었음.

1. 이 세보는 一九八三年 편찬 발간한 임술보(壬戌譜)의 편찬 정신을 계승하여 관존민비(官尊民卑) 남녀차별(男女差別)적서(嫡庶)구별 및 순한문판(純漢文版) 편집 등 구래(舊來)의 누습(陋習)을 지양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 족보로 편찬하는 동시에 시대조류에 맞추어 전산화(電算化)를 도모함으로써 자손들로 하여금 족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현대적이고도 찾아보기 쉽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이 세보는 우리의 최초보(最初譜)인 임오보(壬午譜=1762년 발간)를 비롯하여 갑자보(甲子譜=1804년 발간) 을사보(乙巳譜=1845년 발간) 갑술보(甲戌譜= 1874년 발간) 무오보(戊午譜=1918년 발간) 등 구보를 기본으로 편찬 발간한 임술보(壬戌譜=1982)의 편찬규칙을 준용(準用)하고 그 후 발간된 각 문중파보(門中派譜)도 참고하여 현존 자손들을 가능한 한 누락자 없이 수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이 세보는 5권 1질로 하되 5권은 보록총색인부(譜錄總索引簿)와 족보편람(族譜便覽) 및 사례편람(四禮便覽)·진류편람(晉柳便覽)을 묶어서 부록으로 발간한다.
  - ① 수권(首卷=卷一) 전반부에는 종훈(宗訓) 종장(宗章) 및 진강사(晉康祠)를 비롯한 현조(顯祖)의 영정(影幀) 단묘(壇墓) 사우(祠宇) 서원(書院) 비갈(碑碣) 재실(齋室) 등의 사진을 봉재(奉載)하고 본보의 발간사 서문 및 역대 구보의 서문(序文) 발문(跋文) 보계변증기사(譜系辯證記事) 그리고 명조(名祖)나 파조(派祖)의 실기(實記) 행장(行狀) 비명(碑銘) 등의 원문과 번역문을 병재(併載)하고 항렬도(行列圖)와 범례(凡例=譜規) 상대분파도(上代分派圖)와 현재까지의 계보도(系譜圖) 검색인표를 수록한다.
  - ② 권一 후반부에는 시조(始祖)로부터 19세까지의 상대보록(上代譜錄)을 봉재하고.
  - ③ 권二에는 양화공파(良和公派)의 19세부터 31세이하 까지 수록하였음.
  - ④ 권三에는 총랑공파(攄郎公派)의 19세부터 31세이하 까지 수록하였음.
  - ⑤ 권四에는 대사성공파와 판서공파의 25세부터 31세 및 31세 이하 분까지 수록하고 말미(末尾)에 본보 보발(譜跋=편집후기) 및 본 편찬위원회 임원록(任員錄)을 붙인다.
4. 열조(列祖)에 관하여 기간보서(既刊譜書)에 미기(未記) 또는 오기(誤記)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명한 고거(考據)가 있는 한 편찬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제에 보완 또는 시정한다.
5. 충효(忠孝) 학행(學行)등 행적이 현저한 분들의 유사(遺事)나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은 세보에는 약기(略記)하고 상세한 것은 1993년 대종회에서 발간한 「○○○씨문헌총집」 수록면(收錄面)을 첨기하여 참고토록 한다.
6. 생졸(生卒) 기타 년도는 구보대로 간지(干支)를 이기(移記)하되 서기년대를 환산병기(併記)하여 숫자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단 오기(誤記)가 분명한 것은 차제에 바로잡는다.
7. 모든 휘(諱)나 이름 밑에 음을 달아 주고 행적(行蹟)등은 번역문만 붙이고 원문은 지

면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8. 배우자(配偶者=처)는 「배(配)」로 통일하고 사조(四祖)기입 원칙을 답습하되 친가에 특기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 첨기(添記)토록 한다.
9. 출가녀의 기록은 입술보와 같이 구래(舊來)의 여서위주(女壻爲主)에서 본인위주로 바꾸어 출가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약력 경력 등을 기입하고 남편(夫)은 방서(傍書)로 본관, 성명, 학력 경력 및 시부명(媿父名)과 자녀명을 첨기토록 한다.
10. 기재순은 선남후녀(先男後女)원칙을 취하고 무오보(戊午譜)이후의 적서(嫡庶) 기입순은 당사자의 뜻에 따른다.
11. 20세전 요절자(夭折者)는 등재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록할 수도 있다.
12. 사망은 졸(卒)로 통일하고 七十 전 졸은 향년(享年)으로 七十 이상은 수(壽)로 상대(上代)는 표기하였으나 생졸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년수를 생략하였음.
13. 묘소의 좌향(坐向)은 편의상 기본방향인 8방위(子坐 : 정남향 午坐 : 정북향 卯坐 : 정서향 酉坐 : 정동향 艮坐 : 정서남향 巽坐 : 정서북향 乾坐 : 정동남향 坤坐 : 정동북향)만 풀이하고 기타 좌향은 부록편의 방위도를 참조토록 한다.
14. 계통 미상자를 입보시키고자 할 때에는 양자(養子)로 표기하되 반드시 해당 문중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편찬회의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5. 학력은 수단대로 기재하되 최종학력과 취득학위 및 고시합격자는 병기해 준다.
16. 경력은 관민 평등원칙에 따라 수단내용을 참작 주요부분만 적기(摘記)한다.
17. 보록 중 입출계자(入出系者)는 그 생양가(生養家)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색인면을 첨기한다.
18. 최하단 기두(起頭)연결색인은 「견하(見下)·견상(見上)-○○○면」으로 명기한다.  
(견하 : 아랫代보기, 견상 : 윗代 보기)
19. 六·二五사변 표시는 「경인란(庚寅亂)」으로 하지 말고 「6·25 사변」으로 통일한다.
20. 보록 편집체제는 11字高 10字平 8分間 횡간보(橫間譜)를 원칙으로 하고 첩수(疊數=段數)는 각 권 모두 7단으로 통일한다.
21. 보록의 서체(書體)는 휘자(諱字)는 견명조체 5호로 배(配)는 7호로 기타는 신명조체 9호로 하되 문헌편 제 기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2. 전산화편찬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도 편리한 DB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선택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그 최종선택은 편찬회의에서 결정한다.
23. 본보에서 사용하는 약물(約物)은 다음과 같다.
 

① 曆 : 년월일	② 學 : 학력	③ 婚 : 결혼년월일
④ 經 : 경력	⑤ 職 : 직업	⑥ 賞 : 포상
⑦ 著 : 저서	⑧ 終 : 사망년월일	⑨ 冢 : 묘소
⑩ 配 : 처	⑪ 父 : 장인	⑫ 宗 : 장조부
⑬ 繼 : 장증조부	⑭ 外 : 처외조부	⑮ 夫 : 남편
⑯ 父 : 시부	⑰ 子 : 출가녀아들	⑱ 女 : 출가녀딸
24. 보책 규격은 4×6배판 양장으로 사철제본하고 용지는 50g 코트지로 하되 권별 질별 케이스들이로 한다.

25. 책 표지는 남청색 포(布)크로스 1천 8백 파운드로 하고 제자(題字)는 금박(金箔)으로 한다.
26. 영정(影幀) 단묘(壇墓) 사우(祠宇) 등의 사진 봉재는 각 파조(派祖)와 참상관(參上官) 이상의 관력(官歷) 학덕(學德)이 높은 명조는 가능한 한 수집하여 천연색으로 수록한다.
27. 묘도(墓圖=山圖)는 위 사진에 소재지가 명기됨으로 금번 보책에서는 생략한다.
28. 향열도(行列圖)는 임술보 게재도를 그대로 전재한다.
29. 부록 족보편람은 족보 봉심(奉審)에 참고가 될 필사항 및 1996년 대종회 발간 진류편람(晉柳便覽)을 한글로 별도 편책한다.
30. 보책발간부수는 3천 5백질 CD 롬은 4천매 제작을 목표로 하되 주문량을 감안 적의 조정한다.
31. 본 세보는 을유보(乙酉譜)라 칭한다.

○○○씨 세보편찬위원회



메모

---



---



---



---